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41 발의연월일: 2025. 1. 15.

발 의 자:한정애·이재강·박용갑

이학영 · 송옥주 · 양문석

김동아 · 임오경 · 허 영

정일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의 주택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국내총생산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최근 건설인력의 고령화, 비 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 는 평가임.

이 같은 상황에서 공업화주택은 자재의 규격화로 인한 대량생산 및 공기 단축, 자재비 및 인건비 절감과 함께 맞춤형 주문생산, 품질 확 보 및 구조변경, 유지보수 등이 용이하고 친환경적인 시공, 자원의 재 활용 등의 장점이 있어 주택건설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 음.

이에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용어인 '공업화주택'을 '조립식 건축주택'으로 변경하여 '공업화주택'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,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립식 건축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

(숙박시설, 오피스텔 등)을 추가하고,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의 인 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(안 제51조 및 제53조).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6절의 제목 중 "공업화주택"을 "조립식 건축주택"으로 한다.

제51조의 제목 중 "공업화주택"을 "조립식 건축주택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업화공법"을 "조립식 건축공법"으로, "주택을 공업화주택(이하 "공업화주택"이라 한다"을 "주택(준주택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부터 제53조까지에서 같다)을 조립식 건축주택(이하 "조립식 건축주택"이라 한다)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·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"공업화주택"을 각각 "조립식 건축주택"으로 하다.

제52조의 제목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중 "공업화주택"을 각각 "조립식 건축주택"으로 한다.

제5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·제2항 중 "공업화주택"을 각각 "조립식 건축주택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-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: 100분의 115 이하
- 2. 「건축법」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: 100분 의 115 이하
- 제8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립식 건축주택의 인정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공업화주택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공업화주택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된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본다.
- 제3조(조립식 건축주택의 건설 촉진에 관한 적용례) 제53조제3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(변경승인을 신청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사목 중 "공업화주택"을 "조립식 건축주택"으로 한

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절 <u>공업화주택</u> 의 인정 등	제6절 <u>조립식 건축주택</u> 의 인정
	드0
제51조(<u>공업화주택</u> 의 인정 등) ①	제51조(조립식 건축주택의 인정
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	등) ①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	
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	
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	
맞춤식 등 <u>공업화공법</u> 으로 건	
설하는 <u>주택을 공업화주택(이</u>	<u>주</u> 택(준주택을
하 "공업화주택"이라 한다)으로	포함한다. 이하 이 조부터 제53
인정할 수 있다.	조까지에서 같다)을 조립식 건
	축주택(이하 "조립식 건축주택"
	<u>이라 한다)</u>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② 국토교통부장관, 시・도지사	2
또는 시장・군수는 다음 각 호	
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	
려는 자에 대하여 「건설산업	
기본법」 제9조제1항에도 불구	
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	
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	
할 수 있다.	<u>.</u>
1. 국토교통부장관: 「건설기술	1

진흥법」 제14조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 는 <u>공업화주택</u>

- 2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 수: 공업화주택
- ③ <u>공업화주택</u>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2조(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)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 에 따라 <u>공업화주택</u>을 인정받 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공업</u> 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 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(생략)
 - 2.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성능으로 <u>공업화주택</u>을 건설한 경우
- 제53조(<u>공업화주택</u>의 건설 촉진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

조립식 건축주택
2
조립식 건축주택
③ 조립식 건축주택
<u>.</u>
제52조(<u>조립식 건축주택</u> 의 인정
취소)
<u></u> 조립식 건축주
<u>택</u>
<u>조립식 건축주택</u>
1. (현행과 같음)
2
<u></u> 조립식 건축주택
제53조(조립식 건축주택의 건설
촉진) ①
주리신

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 할 수 있다.

② 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 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 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 • 제43 조 · 제44조 및 「건축사법」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신 설>

<u> 건축주택</u>
② <u>조립식 건축주택</u>
조립식 건
축주택

-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립식 건축주택 으로 인정받은 주택에 대해서 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 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 률의 제한: 100분의 115 이하 2. 「건축법」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: 100분의 115 이하

제8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| 제8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

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 1항에 따른 조립식 건축주택의 인정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 다.